

##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 
번호

제출년월일 : 1997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개정이유

-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환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'97. 10. 1자로 지방세 법령에 신설됨에 따라
- 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등을 규정하기 위함

### 주요골자

- 적부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
  - 위원 임기(2년) 및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
  - 공무원이 아닌 자의 수당등 지급
  -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규칙에 정함

조례안 : 별 첨

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3조

기타 참고자료 : 별 첨

##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적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